##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1.01.21.

5-1-22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개정 2017.09.25.

개정 2018.07.11.

개정 2020.01.17.

개정 2020.06.17.

개정 2023.08.29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72조에 따른 수원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, 1, 17.>
-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, 9, 25.>
- 1. 등록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<신설 2017. 9. 25.>
- 2.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·의결 <신설 2017. 9. 25.> [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<2020. 1. 17.>]
- 3. 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<신설 2017. 9. 25.> [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<2020. 1. 17.>]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 7. 11, 2020. 1. 17, 2020. 6. 17. 2023. 8. 29.>
- 1. 교직원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(법인 추천인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 9. 25. 2020. 1. 17. 2020. 6. 17.>
- 2. 학생으로 본 대학 학생자치기구 및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 <개정 2017. 9. 25, 2020 6 17 >
- 3. 관련 전문가로 대학 재정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(해당 전문가의 소속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)
- <개정 2017. 9. 25, 2020. 1. 17, 2020. 6. 17.>
- 4. 삭제 <2017. 9. 25.>
- 5. 기타 총장이 위촉한 사람 <신설 2020. 1. 17.>
-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<개정 2017. 9. 25, 2020. 1. 17.>
- ③ 총장은 학부모 또는 동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7. 9. 25, 2020. 1. 17.>
- ④ 삭제 <2020. 6. 17.>
- ⑤ 삭제 <2020. 6. 17.>
- 1. 삭제 <2020. 6. 17.>
- 2. 삭제 <2020. 6. 17.>

3. 삭제 <2020. 6. 17.>

- 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총장이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<개정 2020 1 17 >
- **제5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다 <개정 2020 1 17 >
- ②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임기 중에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촉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, 1, 17.>

**제6조(회의)** <개정 2017, 9, 25.>

- ① 삭제 <2017. 9. 25.>
-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0. 1. 17, 2020. 6. 17.>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정 및 안건을 본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 내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. 17.>
- 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회의내용, 결정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,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5년간 보존한다. <개정 2020. 1. 17.>
- ②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본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 내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11, 2020. 1. 17, 2020. 6. 17.>
-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<신설 2020. 6. 17.>
- 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<신설 2020 6 17>
- 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<신설 2020. 6. 17.>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17.>
- **제8조(사무)** ① 위원회의 사무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. <개정 2017. 9. 25, 2020. 1. 17, 2020. 6. 17 >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**제9조(보고)**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, 1, 17.>
- **제10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, 9, 25.>
- 제11조(개정) 삭제 <2017. 9. 25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